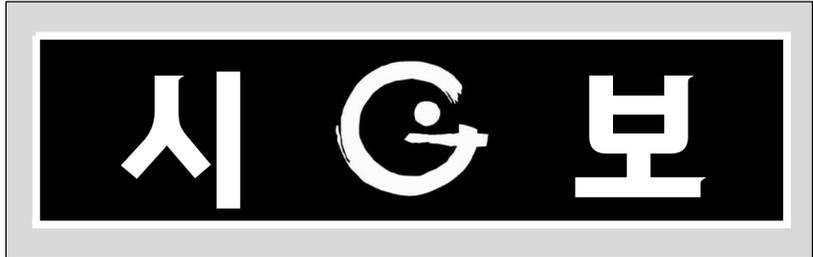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3호(호외) 2024. 3. 29.(금)

조 례

광양시 조례 제2119호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1
광양시 조례 제2120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광양시 조례 제2121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광양시 조례 제2122호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18
광양시 조례 제2123호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4
광양시 조례 제2124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광양시 조례 제2125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36
광양시 조례 제2126호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41
광양시 조례 제2127호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광양시 조례 제2128호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	49
광양시 조례 제2129호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31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56
--------------	---------------------------------------	----

회 람										
--------	--	--	--	--	--	--	--	--	--	--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19호

붙 임 :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0호

붙 임 :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300억원 이상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 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 자금 지원신청서”를 “없으면 자금 지원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없는 한”을 각각 “없으면”으로 한다.



제34조 중 “미리 예측하여”를 “예측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선출한다.</u></p> <p>③ (생략)</p> <p><u><신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호선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의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u>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300억원 이상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u></p>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 8. (생략)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 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⑤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기간 내 -----

2. ~ 8. (현행과 같음)

③ -----
----- 없으면 -----
자금 지원신청 시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없으면 -----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⑥ 시장으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3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도의 부담금 지원 등) 시장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전라남도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⑥ -----

----- 없으면 -----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도의 부담금 지원 등) -----

----- 예측하여 -----
-----.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1호

붙임 :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市場)(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를 “시장등”으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광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상권 활성화구역·상점가”를 “시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전통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등”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인은”을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할 것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성별)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남 00명, 여00명)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명:
3. 소재지:
4. 면적:
5. 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상인"이란 <u>시장(市場)(이하 "시장"이라 한다)</u>·<u>시장 활성화구역</u> 및 <u>상점가</u>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p> <p>2. 3. (생략)</p> <p>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u>시장·시장 활성화구역</u> 또는 <u>상점가</u>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p> <p>5. ~ 7. (생략)</p> <p>8. "<u>골목형상점가</u>"란 <u>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u> 구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u>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u>----- ----- ----- ----- ----- ----- -----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 ----- <u>시장등의</u>----- -----.</p> <p>5. ~ 7. (현행과 같음)</p> <p>8. "<u>골목형상점가</u>"란 <u>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광양시장이 지정한</u> 구역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4조(설립) ① 법 제65조에 따라 <u>시장·상권 활성화구역·상점가</u>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설립) ① -----<u>시장등</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위탁관리) ① <u>광양시장은 전통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u>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양시 주차장 조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3조(위탁관리) ① -----<u>시장등</u> ----- ----- ----- -----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u>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u>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p>	<p>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 ----- <u>시장등</u> ----- -----</p>



현행	개정안
<p>다해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8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p> <p>① ~ ④ (생략)</p> <p>⑤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u>상인</u>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u>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30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8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u>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u></p> <p>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p> <p>-----</p> <p>----- <u>상인</u>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p> <p>-----</p> <p>----- . <u><단서 삭제></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u></p> <p>제3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p>1. <u>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p>



현행	개정안
<p><u>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u></p>	<p><u>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할 것</u></p> <p><u>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u></p>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2호

붙임 :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광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기본원칙,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 시책 개발, 우수 기업 발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평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시책 발굴·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ESG 업무를 담당하는 광양시 국장급 공무원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위원장(위원장)의 직무(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위원회)의 회의(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임시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위원회)의 회의(회의)는 재적위원(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의 출석(출석)으로 개의(개회)하고, 출석위원(출석위원) 과반수(과반수)의 찬성(찬성)으로 의결(의결)한다.

③ 위원회(위원회)의 운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사항)은 「광양시(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를 준용(준용)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위원회)에 출석(출석)한 위원(위원)에게는 예산(예산)의 범위(범위)에서 수당(수당)과 여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공무원)인 위원(위원)이 출석(출석)하는 경우(경우)에는 그러(그러)하지 아니(아니)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시장)은 ESG 경영(ESG 경영) 활성화(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필요)한 경우(경우) 정부(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국내(국내)·외(외) 기업(기업), 기업(기업) 협의체(협의체) 및 연구기관(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협력체계)를 구축(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① 시장(시장)은 ESG 경영(ESG 경영) 활성화(활성화)에 현저(현저)한 공로(공로)가 있는 개인(개인)이나 기업(기업) 등에 「광양시(광양시) 포상 조례(조례)」에 따라 포상(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시장)은 ESG 경영(ESG 경영) 활성화(활성화)에 우수한 성과(성과)가 있는 기업(기업)에 지원사업(지원사업) 등을 우선(우선)하여 적용(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3호

붙 임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구영향검토제”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또는 개



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
3.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4. 인구 교육과 인식 개선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인구영향검토제)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개정 등의 단계에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인구정책위원회

제11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각 한 차례씩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3.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 참여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구정책 활성화 등

제18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인구정책 홍보)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안내서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0조(인구의 날) 시장은 시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인구정책 공모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행사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전입지원시책) ① 시장은 전입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전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2. 전입학생 지원
3. 전입배우자 지원
4.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수립한 인구정책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양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전입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전입신고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따른다.



[별표]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제22조 관련)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전입세대 지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공통지원 : 전입세대 당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1회에 한함) ○ 차등지원 : 전입세대 당 쓰레기종량제 봉투 차등 지급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전입세대원수</td> <td>지원내용</td> </tr> <tr> <td>3명 이하</td> <td>2,000리터</td> </tr> <tr> <td>4명 이상</td> <td>3,000리터</td> </tr> </table>	전입세대원수	지원내용	3명 이하	2,000리터	4명 이상	3,000리터	
전입세대원수	지원내용								
3명 이하	2,000리터								
4명 이상	3,000리터								
전입학생 지원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한 학생 * 단, 전입학생이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세대와 전입학생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고,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제출 시 재학생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 1인당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1회에 한함)							
전입배우자 지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	○ 1인당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1,000리터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1인당 5만원으로 기관·기업 당 연간 최고 300만원 이내 * 동일인 최초 1회에 한함.							
<p>※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지원은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p>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4호

붙임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35명”을 “4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 략)</p> <p>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 략)</p> <p>3. 국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악장을 포함하여 <u>35명</u> 이내로 구성한다.</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40명</u> ----- -----.</p>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5호

붙 임 :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는 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를 “통보를 받은”으로 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평가의 실시)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는 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평가위원회</u></p> <p>제12조(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p>제9조(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실시하고, ----- -----.</p> <p>③ ----- 통보를 받은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업무관련 국·소장급 공무원 2명 이내
3. 청소 또는 환경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6명 이내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

<삭 제>

<삭 제>

<삭 제>



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6호

붙임 :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6.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점검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구축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 병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절차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담 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등 검사 비용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에 따른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또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 등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7.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득한 사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원절차)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과 선정 등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7호

붙 임 :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세자녀”를 “두자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회비의 감면)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u>세자녀</u> 이상의 가정</p> <p>5. · 6. (생 략)</p>	<p>제10조(회비의 감면)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두자녀</u> -----</p> <p>5. · 6. (현행과 같음)</p>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8호

붙 임 :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2.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3. 생활 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 3. 12)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129호

붙임 :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로 월 <u>900,000원</u>, 보조활동비로 월 <u>200,000원</u>을 지급한다. 	<p>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p> <p>-----</p> <p>----- <u>1,200,000원</u>-----</p> <p>----- <u>300,000원</u>---</p> <p>----</p>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31호

붙 임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립국악단란의 “35명”을 “40명”으로 하고, 시립국악단의 단원란 중 “30”을 “3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단원의 구분 및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종 류</th> <th style="width: 60%;">정원(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시립합창단 (45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 주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보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시립소년소녀합 창단 (5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 주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악지도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6</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시립국악단 (35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희악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기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30</u></td> </tr> </tbody> </table>	구 분	종 류	정원(명)	시립합창단 (45명)	지 휘 자	1	반 주 자	2	단 무 장	1	악보기획담당	1	단 원	40	시립소년소녀합 창단 (50명)	지 휘 자	1	반 주 자	1	단 무 장	1	성악지도담당	1	단 원	46	시립국악단 (35명)	지 휘 자	1	단 무 장	1	악 장	1	연희악장	1	악기기획담당	1	단 원	<u>30</u>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h>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th> <th style="width: 60%; text-align: center;">---(---)</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4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u>35</u></td> </tr> </tbody>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명)	-----	---	-----	---	-----	---	-----	---	-----	---	-----	<u>35</u>
구 분	종 류	정원(명)																																																																											
시립합창단 (45명)	지 휘 자	1																																																																											
	반 주 자	2																																																																											
	단 무 장	1																																																																											
	악보기획담당	1																																																																											
	단 원	40																																																																											
시립소년소녀합 창단 (50명)	지 휘 자	1																																																																											
	반 주 자	1																																																																											
	단 무 장	1																																																																											
	성악지도담당	1																																																																											
	단 원	46																																																																											
시립국악단 (35명)	지 휘 자	1																																																																											
	단 무 장	1																																																																											
	악 장	1																																																																											
	연희악장	1																																																																											
	악기기획담당	1																																																																											
	단 원	<u>30</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명)	-----	---																																																																											
	-----	---																																																																											
	-----	---																																																																											
	-----	---																																																																											
	-----	---																																																																											
	-----	<u>35</u>																																																																											

